『교육논총』 편집위원회 규정

2021. 6. 14.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이 발행하는 『교육논총』의 편집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설치) 편집위원회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연구원 내에 둔다.

제3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5인 내외, 편집간사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교육연구원장이 겸임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각 대학교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전공과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하여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 중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약간 명의 책임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교육논총』 논문 투고 및 발간 규정', '『교육논총』 심사 규정'을 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③ 별도의 규정으로 『교육논총』의 투고, 심사 및 발간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교육논총』 발간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편집 업무상 주요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논총』 논문 투고 및 발간 규정

2022. 12. 15.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이 발행하는 『교육논총』 논문의 투고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논문의 내용) 『교육논총』은 초등교육을 비롯하여 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논의를 담은 학술 연구 논문을 다룬다.

제3조 (논문의 체제)

①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② 논문은 '『교육논총』 논문 투고 및 발간 규정'과 '중요 표기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③ 논문은 제목, 저자명과 소속기관명, 요약, 본문,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한다. 국문 논문은 국문과 함께 영문 제목, 저자명 및 소속기관명, Abstract를 함께 제시한다. 영문 논문은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④ 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크기 기준 20쪽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⑤ 국문요약은 가로 20줄 이내의 분량으로 논문 제목과 이름 다음 부분에 제시하고, 하단에 5개 이내의 주제어를 제시한다. 영문 Abstract는 200단어 이내의 분량으로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하고, 하단에 Key words를 5개 이내로 제시한다.

⑥ 학위논문을 재구성하여 투고할 경우에는 "본 논문은 OOO(연도)의 석사(혹은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학위취득자가 주저자(제1저자)여야 한다.

⑦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사사표기를 명기해야 한다.

⑧ 참고문헌 끝에 소속, 직위를 명시한다.

제4조 (논문 투고)

① 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JAMS(https://ginue.jams.or.kr)를 이용하여 투고한다.

② 투고 시에는 연구윤리서약, 논문 정보, 저작권이양동의서 및 연구윤리 확약서, 저자 점검 체크리스트, 저작권 설정(CCL)을 작성하고, 투고 논문의 'KCI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첨부한다. 이때 표절률은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투고자가 긴급투고를 원할 경우, 논문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여 긴급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

① 투고된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한 자로서 논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③ (저자의 자격 및 책임) 저자는 연구내용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과 해석에 상당한 기여가 있음
2. 원고 작성,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데 상당한 기여가 있음
3. 학술지에 게재될 최종 원고의 내용 및 양식을 최종 승인함
4. 연구의 전반적인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한 모든 사항의 적절한 조사 및 해결에 관련된 제반 책임을 지기로 동의함

④ (IRB 관련 사항) 인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author's institute, IRB)의 방침에 따라 피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IRB의 승인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기재한다.

⑤ (이해상충 보고) 저자는 논문 투고시에 자료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해 밝혀야 한다. 잠재적 이해상충의 예는 영리기업으로의 재정 지원 또는 관계, 이해 집단의 정치적 압력 및 학문적으로 연계된 문제 등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와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 등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⑥ (젠더혁신정책의 반영) 투고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즉, 저자는 성별 기술에서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나는 성(sex)과 정신적 혹은 심리 사회학적,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험 대상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성과 젠더를 결정한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연구가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경우, 저자는 그 정당성을 밝혀야 한다. 또한, 사람 연구 대상의 경우 인종(race) 또는 민족(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을 제시해야 한다.

⑦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보고)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특수관계인의 연구에 대한 명확한 기여를 밝혀야 한다.

⑧ (연구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투고 논문에는 연구 대상자 개인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단, 개인 정보 식별이 연구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투고 전에 각 개인에게 원고의 내용을 보여주고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논문에 이를 명시한다.

⑨ 저자는 위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논총』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표준출판윤리를 따른다.

제6조 (교육논총 발간)

① 『교육논총』은 연 4회 발간되며, 원고 제출 마감일과 발간일은 아래와 같다.

	1호	2호	3호	4호
제출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발간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② 필요시 영문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③ 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게재 순서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게재되는 논문 편수가 많은 경우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으며, 최종 논문 편수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동일 저자의 논문 게재는 한 호에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심사료, 게재료 및 별쇄본 비용)

① 심사료는 3만원으로 한다.

② 게재료는 일반 논문은 편당 20만원,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한 논문은 편당 30만원으로 한다. 논문 최종본 기준 16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1페이지 당 3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③ 논문의 별쇄본이 필요한 경우,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저작권 권한 명세 및 활용 동의 절차)

① 『교육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에 귀속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에 이양된다.

② 투고 시에는 JAMS를 통해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저작물 이용 허락권(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본 학술지의 설정에 따른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논총』 심사 규정

2021. 12. 9.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교육논총』 발간을 위한 논문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 심사 기준)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① 연구 주제의 적합성과 참신성
② 연구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
④ 논문 체계의 적합성
⑤ 연구 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제3조 (논문 심사 절차)

① 접수
1. 원고 제출 마감일까지 투고된 논문만 접수한다.
2. '『교육논총』 논문 투고 및 발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은 대학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전공 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여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심사위원 추천에서 배제한다.
3.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4.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회피),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제척).

③ 심사
1. 논문 심사는 1차 심사와 필요시 2차 심사로 진행한다.
2. 1차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 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4조 (논문 심사 결과)

① 각 심사위원은 5개 항목의 합계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게재가', 80점에서 89점이면 '수정 후 게재가', 70점에서 79점이면 '수정 후 재심', 70점 미만이면 '게재 불가'로 심사한다.

②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 3인의 총평에 따라 아래의 기준표에 의거하여 판정한다.

유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9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2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13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4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5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18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9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③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 가능하며,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요구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잠정적으로 ‘게재가’로 간주하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을 받은 논문은 2차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④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을 준 심사위원의 경우에만 진행한다. 2차 심사는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심사한다.

⑤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 논문과 ‘수정 보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호에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

⑥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한다.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이 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게재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처리한다.

⑦ 투고자는 최종판정의 심사결과 및 심사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교체를 위하여 심사거부 의사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③ 심사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기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즉시 알린다.

④ 심사위원은 위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논총』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논총』 연구윤리 규정

2021. 12. 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교육논총』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논총』의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기타 관련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교육논총』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4조 (저자의 의무) 저자는 제2조에서 밝힌 연구윤리 위반 행위 금지 사항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아울러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 금지사항 준수) 연구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투고,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자격 취득 등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를 기초로 연구결과를 생성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결과 보고 등 연구의 각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
3. 표절: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로 제시하는 행위
4. 중복투고: 본인의 연구물을 동시에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5.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물을 『교육논총』 이외에 다른 곳에 게재하거나, 기 게재된 논문을 게재하는 행위.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학위논문의 축약본 및 그 일부를 수정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기하는 경우는 인정
6. 부당한 저자 자격 취득: 저자의 표기 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지위에 상관이 없으며, 연구에 대한 학술적 기여에 기초하지 않고 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

제6조 (이해상충)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자료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해 밝혀야 한다. 잠재적 이해 상충의 예는 영리기업으로의 재정 지원 또는 관계, 이해 집단의 정치적 압력 및 학문적으로 연계된 문제 등이 될 수 있다. 이해상충의 보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저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와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 등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7조 (젠더혁신정책의 반영) 저자는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 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특수관계인 연구부정 방지) ① 연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공동 투고를 할 경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누락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확인 절차를 거쳐 논문 투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출판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③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은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신고서"를 바탕으로 윤리위원회가 "공동저자로서의 명확한 기여에 대한 실질적 증명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련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제3장 편집 관련 윤리 규정

제9조 (편집위원(장)의 중립성)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특히,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취급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이 때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제11조 (저자 정보 비공개)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심사 관련 윤리 규정

제12조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논문 심사 중에 윤리 규정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논문심사 시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사퇴)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사퇴 의사를 통보한다.

제14조 (심사의 공정성)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이해상충이라도 편집위원회에 밝혀야 하며, 심사 논문과 이해상충이 있다면 해당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저자에 대한 배려) 심사위원은 지식으로서의 저자의 의견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비밀엄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5장 윤리 규정 시행 세칙

제17조 (윤리 규정 서약) 『교육논총』의 저자는 투고 시 윤리 규정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기타 관련자는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서약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은 『교육논총』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교육연구원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9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며,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 (윤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심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교육연구원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교육연구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 관리 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제22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는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수는 『교육논총』 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③ 제보자가 접수할 때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되,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제23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례) 윤리위원회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 자신의 논문의 중복 투고가 밝혀진 경우
2. 연구자 자신의 논문의 무단 중복 게재가 밝혀진 경우
3.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연구로 제시한 경우
4.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의 전체 혹은 일부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5. 자신이 설계, 수행하지 않은 연구에 저자로 등재된 경우

제24조 (조사 및 소명)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및 판정된 저자에게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을 알리고, 출석 또는 문서를 통해 관련절차를 사전에 공지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구자는 소명 요청에 응해야 하나, 소명의 기회를 거부할 경우 1회 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소명과정 없이 의결한다.

③ 조사 및 소명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해당 연구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명예와 권리도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심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교육연구원장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판정)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26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 조사 결과의 보고)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윤리 규정 위반 조사 결과를 교육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1. 연구윤리 규정 위반 조사 결과 보고서
2. 해당 논문 또는 연구물의 심사 보고서
3. 연구윤리 규정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4.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저자의 소명 및 처리 결과
5. 기타 필요한 자료

제27조 (결정 통지 및 이의제기)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교육연구원장은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 결과,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과는 별도로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통지한다.

③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가 제시된 기일 안에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한다.

제28조 (후속조치) 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경우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연구물의 게재를 취소한다.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차기 학술지와 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를 공지한다.
2. 게재 취소된 연구물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출판 목록에서 삭제한다.
3.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자격을 3년간 박탈하며, 해당기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했을 경우 그 과중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투고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의 제재를 할 수 있다.
5. 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의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2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육연구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③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와 출판 윤리에 관한 사항은 국제표준출판윤리를 준용하여 『교육논총』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